



해외경쟁정책동향

제53호
2011. 3. 15.

목 차

1. [캐나다]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발표	1
▶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수요를 반영해 구매자 수요독점, 소수주주 지분, 임원겸임 등의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	
2. [중국] 국무원, 기업결합에 관한 안전심사제도 관련 규정 발표	2
▶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결합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의 범위(대상), 내용 및 절차 등을 제시	
3. [EU] 최고법원, 이윤압착행위의 시지남용성 판단기준 제시	3
▶ 스웨덴 지방법원의 사전심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윤압착행위(margin squeeze)가 단독으로 TFEU 제102조를 위반하는 시지남용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	
4. [일본] ‘공동의 거래거절’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	6
▶ 대형 음반제작사들이 다른 벨소리 제공업체의 음원 저작권 라이선싱 요청을 거절한 행위에 대하여 배제조치를 부과한 공취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	
5. [미국] OPEC의 담합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및 입법 동향	7
6. [중국] 공상관리총국,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에 과징금 부과	8

국제협력과

캐나다 1.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발표

(정리 : 전상준 사무관)

- (개요) 캐나다 경쟁당국(Competition Bureau)은 금년 가을 완료를 목표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(Merger Enforcement Guidelines)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(2. 24)
 - 지난 수개월 간 파악한 기존 가이드라인('04. 9월 도입)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해 2/4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예정
- (주요 개정 방향) 경쟁당국의 법집행 실무를 반영하고, 그 동안 경제적·법적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 위주로 개정을 추진
 - ※ 이번 개정은 미국 DOJ와 FTC가 최근 개정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
 - 구매자 수요독점(monopsony) 문제의 판단 기준에 대해 OECD 논의결과를 반영하고 지난 2009년 제정된“경쟁자 간 협조 행위 가이드라인*”에 부합하도록 보완
 - * Competitor Collaboration Guidelines : 경쟁사업자 간의 전략적 제휴·협정 등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경쟁당국의 처리방안 등을 설명한 지침(2009년 제정)
 - 소수주주 지분, 임원겸임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OECD 논의동향을 반영해 경쟁당국의 판단기준을 제시
 - 기업결합 심사가 시장확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획일적인(linear) 절차가 아니라 순환적인(iterative) 과정이라는 점 강조
 - 특히,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업결합의 시장지배력 확보 여부 판단을 중시
- (전문가 의견) 앞으로 기업결합심사 시 정형화된 접근방법을 탈피하고 구체적 사실의 검토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
 -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업체들에 대한 자료요청이 증가할 것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
※ 출처 :

- ① <http://www.globalcompetitionreview.com/news/article/29798/canada-update-its-merger-enforcement-guidelines/>
- ② <http://www.competitionbureau.gc.ca/eic/site/cb-bc.nsf/eng/03350.html>

중국 2 국무원 기업결합에 관한 안전심사제도 관련 규정 발표

(정리 : 최홍수 사무관)

□ 중국 국무원은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결합(합병, 지배권 취득 등)에 대한 안전심사제도와 관련된 규정*을 제정(2.3.)하고 시행

* 「외국투자자 중국내 기업결합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」(國務院辦公廳 2011 6호)

○ 반독점법 제31조(안전심사제도)의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

□ (주요내용)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결합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의 범위(대상), 내용 및 절차 등을 제시

○ (대상)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방위산업(軍工)관련 기업, 중요 군사 시설 주변기업 및 기타 국가안전과 관련된 기업*을 합병하거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할 경우

* 중요 농산품, 에너지자원, 기초시설, 운수서비스, 기술 및 장비제조 기업 등

○ (내용) 국가안전(방위산업 생산·서비스제공능력 및 관련 시설 규모 등), 국가경제운영, 사회질서, 국가안전관련 중요 R&D에 대한 영향

○ (담당기관) 국무원 주도하에 발전개혁위, 상무부 및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안전심사를 진행

○ (절차) 상무부*에 신청(외국투자자)→연석회의 제출 및 심사개시(신청 후 5일 이내)→일반심사(35일내 완료)→특별심사(추가 60일)

* 제출서류,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‘안전심사제도에 관한 임시규정’ 제정(3.4)

○ (조치) 기업결합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연석회의에서 상무부나 관련부서에 기업결합 중단·취소, 보유 지분 매각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

□ (시사점)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결합심사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·대비가 요망됨

○ 일각에서는 안전심사를 이유로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으나 운용 실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

※ 출처 :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(www.gov.cn)

EU 3. 최고법원, 이윤압착행위의 시지남용성 판단기준 제시

(정리 : 장주연 사무관)

□ (개요) 유럽최고법원(European Court of Justice)은 이윤압착*만으로도 TFEU 102조에 위반하는 시지남용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 (2. 17.)

*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상부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, 하부시장에서 다른 사업자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[margin squeez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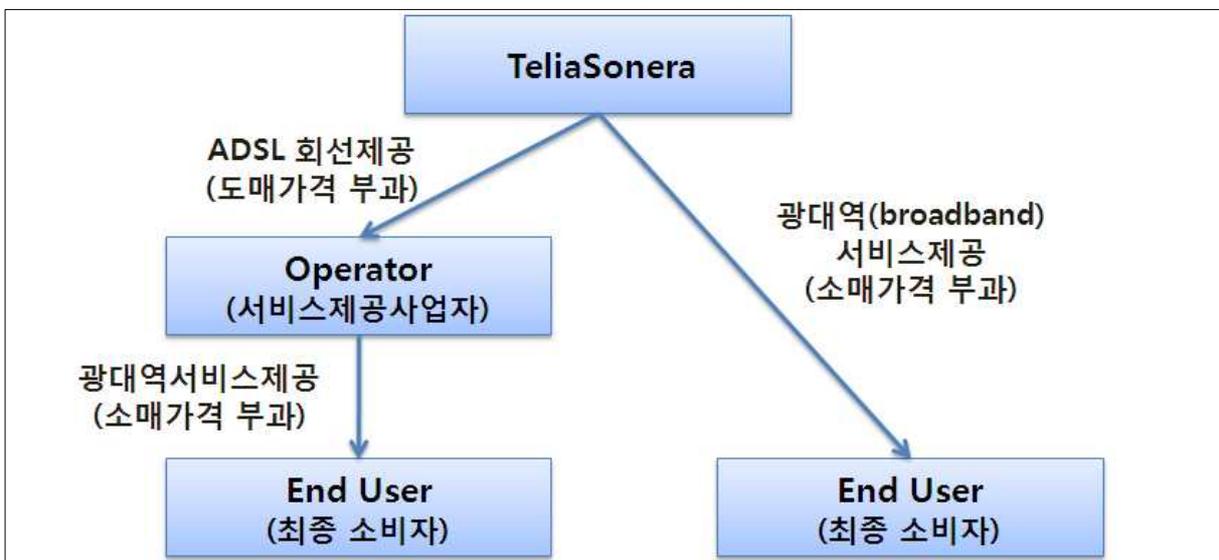
□ (배경) 지난 2004년 스웨덴 경쟁당국은 TeliaSonera*가 이윤압착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, 스톡홀름 지방법원에 1,3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소송을 제기

* TeliaSonera는 북유럽 최대의 전화·인터넷 사업자로서 광대역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ADSL회선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기도 함

○ 소송과정에서 동 지방법원은 이윤압착행위가 단독으로 TFEU 102조*를 위반하는 시지남용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유럽최고법원에 사전심리(preliminary ruling)를 요청 ('09. 2월)

* 스웨덴 경쟁법과 EU 경쟁법은 관할대상 범위만 다를 뿐 내용은 사실상 동일

< TeliaSonera의 사업구조 >



※ 출처 : Case C-52/09 TeliaSonera [2011]

□ 유럽최고법원은 동 지방법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

▶ [질문1] 수직 통합된 시지사업자가 부과하는 도소매가격의 차이(spread) 관련, 어떤 경우에 TFEU 102조 위반의 ‘남용’이라고 할 수 있는가?

⇒ “Teliasonera가 부과한 ADSL 도매가격과 광대역서비스 소매가격 간 차이가 Teliasonera가 최종 소비자에게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*” 법 위반의 ‘남용’에 해당함

* Teliasonera의 ‘광대역서비스 소매가격 < ADSL 도매가격 + 광대역서비스 공급비용’

▶ [질문2] 남용여부 판단 시, ‘시지사업자’가 부과하는 소매가격만을 고려해야 하는가, 또는 ‘경쟁사업자’가 부과하는 가격도 고려해야 하는가?

⇒ 남용여부 판단은 시지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(equally efficient)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바, 시지사업자의 가격 및 비용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 원칙임

- 다만 시지사업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가격 및 비용 정보를 검토할 수 있음

▶ [질문3] 남용여부 판단 시, 당해 행위에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야 하는가?

⇒ 당해 행위에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,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의 잠재적 배제가능성을 입증하면 충분함

▶ [질문4] 시지사업자의 도매상품이 소매상품 공급에 필수불가결(indispensable)한 경우에만 남용이 성립하는가?

⇒ 필수불가결한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커지나,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

▶ [질문5] 시지사업자가 ADSL 회선을 제공할 규제적 의무(regulatory obligation)이 없다는 사실은 남용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
⇒ EU 경쟁법은 정부규제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로 행한 모든 행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, 규제적 의무의 유무는 남용여부 판단과 무관함

▶ [질문6]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지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남용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
⇒ 도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존재는 남용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, 시장지배력의 정도는 반경쟁적인 효과의 크기 판단에만 반영될 뿐 남용여부 판단과는 무관함

⇒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없어도 도매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소매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유무는 남용여부 판단과 무관함

▶ [질문7] 남용여부의 판단은 시지사업자 가격정책의 대상고객(광대역 서비스 제공 사업자)이 신규사업자라는 점에 따라 달라지는가?

⇒ 남용여부 판단 시에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므로 대상고객이 기존 또는 신규사업자인지는 남용여부 판단과 무관

▶ [질문8] ‘남용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지사업자가 가격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요구되는가?

⇒ 이윤압착을 통한 남용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도·소매가격의 차이만 문제될 뿐, 지나치게 높은(낮은) 도매(소매)가격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손실회복가능성은 무관함

▶ [질문9] 높은 초기투자를 요하는 신기술 관련 시장이거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기에 사업자들이 낮은 이윤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할 유인이 있다는 점은 남용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?

⇒ 이윤압착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‘경쟁능력’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법 집행 목적이기에, 시장의 성숙도 및 신기술 관련성 등은 위법성 판단과 무관함

□ (시사점) 이윤압착행위만을 근거로 한 시지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과 EU 최고법원이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바, 향후 법리 발전에 주목할 필요

※ 미 연방대법원은 2009년 linkLine 판결에서 반독점법상 거래의무가 없는(no duty under antitrust law to deal) 수직통합사업자의 이윤압착행위는 (약탈적 가격설정이 아닌 한) 그 자체로 법 위반의 남용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

일본 4. '공동의 거래거절'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

(정리 : 박경숙 사무관)

- (개요) 공동의 거래거절과 관련된 공취위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가 기각돼 고등법원이 제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확정(2.18.)
- (사건의 경과) 대형 음반제작사들*이 휴대폰 벨소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회사를 공동설립하면서 다른 벨소리 제공업체에게 자신이 보유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을 거절
 - * Sony 뮤직, Universal 뮤직(주), Avex 마케팅(주), Victor 엔터테인먼트 등
 - 공취위는 동 행위가 휴대폰 벨소리 제공 서비스 시장 신규진입을 제한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*하고 배제조치를 부과('08. 7. 24.)했으며 음반사들은 고등법원에 항소
 - ※ ① 5개사 자회사를 공동설립하고 경쟁사의 라이선싱 요청을 거절한 사실 ② 벨소리서비스 개시 배경과 동기 ③ 자회사의 배타적 영업전략 등을 고려

< 참고 : 독금법 관련규정 >

- 제2조 9항 : 이 법률에서 「불공정한 거래방법」이란,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1.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, 경쟁자와 **공동으로**,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
 - 1) 어느 사업자에 대하여 **공급을 거절하거나** 또는 공급에 관련된 상품 혹은 역무의 수량 혹은 내용을 제한

- (고등법원 판결내용) 도쿄 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'공동의 거래거절'의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('10.1월)
 - 『공동으로』란 다른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경쟁사업자간에 서로 '의사의 연락'이 있는 것을 의미
 - '의사의 연락'이란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다른 사업자의 행위를 인식·예측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인정
- (시사점) 공동의 거래거절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
 - 카르텔과 관련된 '의사의 연락'에 대해서는 「도시바 케미컬 사건」(1995년)에서 이번 건과 유사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음

미국 5. OPEC의 담합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및 입법 동향

(정리 : 신용호 사무관)

□ 美 연방항소법원은 OPEC* 회원국 국영 정유회사들의 원유가격 담합에 대하여 미국 휘발유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연방지방법원(텍사스)의 기각판결을 지지[항소기각](2. 8.)

*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: 석유수출국기구

○ 연방지방법원은 국가행위이론*(act-of-state doctrine)에 따라 OPEC 회원국 정부가 관여한 담합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

* 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행한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외국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론으로 미국 판례법상 사법자제원리에 근거함

○ 항소법원은 원유수입 차질, OPEC 회원국과의 외교관계 악화, 미국내 외국인 투자감소 등 집단소송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시

○ 전문가들은 천연자원의 처분과 같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관한 문제는 사적소송보다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

⇒ 원고가 전원재판부 재심리(en banc hearing)를 신청할 것이 예측되는 바 향후 절차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

□ Herb Kohl 상원의원(반독점 법사소위 의장)은 DOJ에게 타국 정부의 원유 가격담합에 대한 소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(2. 17.)

○ 동 법안은 '78년 연방지방법원 판결*을 겨냥한 것으로 OPEC 회원국들의 원유가격 담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

* 천연자원의 이동에 관한 조건의 설정은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소각하 판결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v. OPEC)

○ Kohl 의원은 동 법안이 사적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DOJ의 관할권을 확인하는 것이라 강조

※ 지난 '07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통과에 실패한 바 있음

⇒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각국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 입법노력의 성사여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음

중국 6. 공상관리총국,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에 과징금 부과

(정리 : 최홍수 사무관)

- (개요)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(SAIC) 강소성(江苏省) 공상국(이하 '공상국')이 연운항시(连云港市) 레미콘협회가 회원사의 레미콘 공급시장을 분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
- (행위사실) 연운항시(连云港市) 레미콘협회는 회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레미콘업계 자율규약을 제정('09. 3. 3.)
 - 규약에 따라 5개 상임위원사가 사장단회의를 통해 회원사의 레미콘 공급량, 판매지역 분할 등을 결정하고 회원사에 통지
 - 협회는 통지내용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벌금 부과('09. 3. 26.)
 - 다른 회원사의 물량을 인수받은 회원사 : 1,000위안
 - 공급량을 허위보고한 회원사 : 1,000위안
 -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레미콘을 공급한 회원사 : 10,000위안
- (처벌) 공상국은 레미콘협회, 5개 상임위원사, 회원사 등에 대해 카르텔,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규정한 반독점법(제13조, 제16조)을 적용해 처벌
 - ※ 레미콘협회(과징금 20만 위안), 5개 상임위원사(위법소득 13만5천 위안 몰수, 과징금 5만3천 위안), 13개 회원사(시정조치)
 - 공상국은 SAIC의 승인을 받고 전담팀(전국에서 전문요원 10명 선발)을 구성하여 조사·처리
- (시사점) 지방 공상국이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을 처음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
 - 그간 반독점법을 적극 집행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에 이어 SAIC도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할 전망
 - ※ 출처 : 금융시보(www.financialnews.com.cn 2011.3.3.), GLOBAL COMPETITION REVIEW(2 March 2011)